

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설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32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3. 6.

발의자 : 설훈 · 안규백 · 소병훈

김현권 · 전현희 · 변재일

김철민 · 심재권 · 위성곤

문희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 단위로 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을 수립함. 그러나 국회 제출 규정 및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.

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등 미비한 법 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임(안 제6조).

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
일부개정법률안

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5항 중 “통보하여야”를 “통보하여야 하며,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시·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~ ④ (생 략)</p> <p>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, 관계 시·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 설></u></p>	<p>제6조(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통보하여야 하며,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---</u> --.</p> <p>⑥ <u>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시·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</u></p>